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지수 조례

소관부서: 보건소(보건위생과)

제정 2011 · 4 · 7 조례 제 888호 전부개정 2018 · 5 · 18 조례 제1402호 일부개정 2023 · 11 · 1 조례 제2009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3·11·1〉
- **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「지역보건법」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〈개정 2023·11·1〉
- 제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)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의 절차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부칙〈2018·5·18 조례 제1402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·11·1 조례 제200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

[별표] 〈개정 2023 · 11 · 1〉

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.
- 다.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부과기준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	600	1,200	2,400
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1호	100	200	300
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2호	100	200	300